정 관

제 정	1975.05.31	충남교위	관리 1041.1-943(1975.06.09)
개 정	1981.07.20	〃	관리 1042.3-1396(1981.08.03)
〃	1986.02.04	〃	관리 25422-108(1986.02.10)
〃	1986.10.10	〃	관리 25422-942(1986.10.10)
〃	1990.03.20	〃	관리 25400-87(1990.03.20)
〃	1990.12.04	〃	관리 25422-290(1990.12.04)
〃	1991.09.11	충남교육청	관리 25422-343(1991.08.28)
〃	1996.08.05	〃	행정 81422-534(1996.08.02)
〃	1998.12.28	〃	사학관계자협의회(1998.12.07)
〃	1999.02.02	〃	행정 81422-119(1999.02.02)
〃	2000.03.20	〃	행정 81422-268(2000.03.20)
〃	2001.02.16	〃	행정 81800-22(2001.01.04)
〃	2001.12.08	〃	행정 81422-1284(2001.12.08)
〃	2003.08.07	〃	행정 81422-902(2003.08.07)
〃	2003.12.30	〃	행정 81422-1478(2003.12.30)
〃	2006.03.10	〃	행정지원과-2424(2006.03.10)
〃	2007.01.08	〃	행정지원과-249(2007.01.08)
〃	2007.11.05	〃	행정지원과-10449(2007.11.05)
〃	2009.03.01	〃	행정지원과-292(2009.01.09)
〃	2009.06.10	〃	행정지원과-6229(2009.06.10)
〃	2011.10.20	〃	평생교육행정과-9103(2011.09.01)
〃	2013.05.01	〃	평생교육행정과-4905(2013.05.01)
〃	2013.10.18	〃	제 375 차 이사회의(2013.10.18)
〃	2014.02.26	〃	제 380 차 이사회의(2014.02.26)
〃	2016.04.20	〃	제 394 차 이사회의(2016.04.20)
〃	2016.12.26	〃	제 398 차 이사회의(2016.12.26)
〃	2017.12.19	〃	제 406 차 이사회의(2017.12.19)
〃	2020.2.19	〃	제 419 차 이사회의(2020.2.19)

학 교 법 인 북 일 학 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북일학원이라 한다. (변경인가 2009.01.09 행정지원과-292)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변경인가 1996.8.2 행정 81422-534)
1. 북일고등학교(변경인가 2009.01.09 행정지원과-292)
2. 북일여자고등학교(신설 1996.8.2 행정 81422-534) (변경인가 2009.01.09 행정지원과-292)
제 3 조의 2(장학사업)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 및 법인의 학교설립정신 구현을 위하여,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제 3 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정 기부되는 재원을 통하여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선정 기준 및 지급되는 금액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번지에 둔다.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제 5 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사립학교법 제 4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인가 1991.8.28 관리 25422-343)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제 2 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1)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3) 제 1 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변경 2022.2.9 제 428 차 이사회의)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제 11 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이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1 조의 2(예산 ·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1 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 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 월 1 일부터 익년 2 월말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신설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제 12 조의 2(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 삭 제 "(삭제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2 조의 3(위원회의 조직) " 삭 제 "(삭제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2 조의 4(위원장 선출 및 직무) " 삭 제 "(삭제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2 조의 5(회의) " 삭 제 "(삭제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2 조의 6(위원회의 간사 등) " 삭 제 "(삭제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3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7 인 (이사장 1 인 포함)
감 사 2 인

제 14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 년
2. 감 사 : 3 년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3)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5 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 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5) " 삭 제 "(삭제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6 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3) 이사정수의 3 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 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변경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4)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5) 감사 중 1 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변경 2020.2.19 제 419 차 이사회의)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 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 년이 경과한 자

제 16 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6 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 명으로 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16 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1)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 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2)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 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 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3) " 삭제 "(삭제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4) " 삭제 "(삭제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제 16 조의 5(추천위원회) (신설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 10449)

(1) 추천위원회는 북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변경인가 2009.01.09 행정지원과-292)

(2)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 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들의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자 : 3 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 인

(3)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제 18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19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감사의 직무)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21 조(임원의 겸직금지)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2 절 이 사 회

제 22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23 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24 조(이사회 의결 및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25 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 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3 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25 조의 3(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1)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2)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 25 조의 4(행동강령 준수 등) 이 법인의 교직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한다.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제 26 조(이사회 소집 특례)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27 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산운용을 위한 사업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2. 부동산 임대사업(신설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3. 전기업(태양광발전사업)(신설인가 2013.5.1 평생교육행정과-4905)

제 28 조(수익사업의 명칭) 제 27 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기업(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한다. (변경인가 1999.2.2 행정 81422-119)(신설인가 2013.5.1 평생교육행정과-4905)

제 29 조(수익사업체의 주소) 투자사업의 사무소는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번지에 둔다.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제 30 조(관리인)

(1) 제 27 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보수, 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1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경인가 1991.8.28 관리 25422-343)

제 32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1991.8.28 관리 25422-343, 1996.8.2 행정 81422-534)

제 33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인가 1991.8.28 관리 25422-343)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4 조(임용)

(1)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고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또한 교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2)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 2022.2.9 제 428 차 이사회의)

(3) 상기(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30 일전까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4)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5)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 내지 제 17 조를 준용한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6)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7) 상기 (1)(2)항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을 적용하며 교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신설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제 34 조의 2(기간제교사) (변경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1) 사립학교법 제 54 조의 4 제 1 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 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2)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3) 학교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35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1991.8.28 관리 25422-343)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 ·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 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 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변경인가 2001.12.8 행정 81422-1284)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시행일 2008 년 1 월 1 일)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1991.8.28 관리 25422-343)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9. 기타사유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제 36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35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2. 제 35 조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 35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 개월로 한다.
4. 제 35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 년이내로 한다.
5. 제 35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 35 조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 년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 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변경인가 2001.12.8 행정 81422-1284)
7. 제 35 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한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제 37 조(휴직교원의 신분)

(1)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3) 제 35 조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 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제 38 조(휴직교원의 처우)

(1) 제 35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 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 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변경인가 1996.8.2 행정 81422-534)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2) 제 35 조제 5 호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 할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3) 제 35 조제 2 호 내지 제 4 호와 제 6 호 내지 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제 39 조(직위해제 및 해임)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 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 항 또는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 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 할을 지급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5) 임용권자는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 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6)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7)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 항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8)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제 40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1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1 조의 2(명예퇴직수당) (신설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1) 교원으로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1 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삭제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신설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제 41 조의 4(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제 41 조의 5(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 41 조의 6(인사위원회의 조직)

(1)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 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2)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 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1 조의 7(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1 조의 8(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내용 중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의 9(회의록 작성)

(1)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 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41 조의 10(인사위원회 간사 등)

(1)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41 조의 11(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42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3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 삭 제 ” (삭제인가 ’90.12.4 관리 25422-290)

제 44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5 조(징계의결의 기한)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6 조(제척사유)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6 조의 2 (위원의 기피등)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6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7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8 조(징계의결)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9 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49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50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51 조(운영세칙) “ 삭 제 “ (삭제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3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인가 2001.1.4 행정 81800-22)

(변경 2021.2.18 제 423 차 이사회의)

제 51 조의 1(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9 조 제 2 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51 조의 2(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1 조의 3(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5 인 이상 10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15 조 제 2 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51 조의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1 조의 5(의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1 조의 6(분쟁조정 신청) “삭제”

제 51 조의 7(회의개최 등)

(1)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1 조의 8(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

(1)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4) 학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 51 조의 9(심의 결과의 처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 폭행 ·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51 조의 10(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 인을 둘 수 있다.

제 51 조의 11(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1 조의 12(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절 재심위원회

(개정인가 1991.8.28 관리 25422-343)

제 52 조 " 삭 제 "
제 53 조 " 삭 제 "
제 54 조 " 삭 제 "
제 55 조 " 삭 제 "
제 56 조 " 삭 제 "
제 57 조 " 삭 제 "
제 58 조 " 삭 제 "
제 59 조 " 삭 제 "
제 60 조 " 삭 제 "
제 61 조 " 삭 제 "
제 62 조 " 삭 제 "
제 63 조 " 삭 제 "
제 64 조 " 삭 제 "
제 65 조 " 삭 제 "

제 5 절 학교운영위원회

(신설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제 65 조의 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당 법인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초 ·중등교육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변경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제 65 조의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변경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변경 2022.2.9 제 428 차 이사회의)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 249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11. 기타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12. 본 조 각항 이외의 사항은 초 ·중등교육법 제 3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변경인가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제 65 조의 3(구성)

(1) 운영위원회는 15 명 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정수의 2 배수 내에서 투표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 교원위원과 지역인사중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위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변경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3) 위원의 임기는 1 년 또는 2 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변경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4)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월 1 일로 한다.(신설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제 65 조의 4(위원장 및 직무)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제 65 조의 5(회의소집 등)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5 조의 6(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학교에 비치토록 한다.

(2) 제 1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 한다.

제 65 조의 7(사무처리)

(1)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65 조의 8(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 조 내지 제 26 조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변경인가 2000.3.20 행정 81422-268) (변경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변경 2022.2.9 제 428 차 이사회의)

제 6 절 사 무 직 원

제 66 조(자격)

(1)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변경 2014.02.26 제 380 차 이사회의)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2)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관리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가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16.12.26 제 398 차 이사회의)

(3)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7 조(임용)

(1)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3.12.30 행정 81422-1478) (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3)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4)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정년규정을 적용한다.(신설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5)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일반직원 중 총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인가 2003.12.30 행정 81422-1478)

(6)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 5 조의 2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인가 2003.12.30 행정 81422-1478)

제 67 조의 1(근속승진)

(1)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무직원 각각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운영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동안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1. 일반직원 7 급, 8 급, 9 급

(변경 2014.02.26 제 380 차 이사회의)

(2)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한 자로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일반직원

가. 7 급- 11 년 이상, 나. 8 급 – 7 년 이상, 다. 9 급 – 5 년 6 월 이상

(변경 2014.02.26 제 380 차 이사회의), (변경 201.12.26 제 398 차 이사회의) (변경 2017.12.19 제 406 차 이사회의)

제 67 조의 2(명예퇴직) (신설인가 2009.6.10 행정지원과-6229)

(1) 20 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원 중 정년퇴직일전 1 년 이상의 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명예퇴직 시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지급대상범위, 수당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 67 조의 3(특별승진) (신설인가 2009.6.10 행정지원과-6229)

(1) 정관 제 67 조의 2 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2)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7 조의 4(공로연수)

(1) 20 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원 중 7 급 이상 사무직원으로서 정년퇴직시까지 6 개월의 근무기간이 남은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로연수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2.2.9 제 428 차 이사회의)

제 68 조(복무) 일반직원(법인 사무직원 포함)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변경 2016.12.26 제 398 차 이사회의)

제 69 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변경인가 2006.3.10 행정지원과-2424)

제 70 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71 조(징계 및 재심청구)

(1) 일반직원(법인 사무직원 포함)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법인 사무직원 포함) 징계위원회는 법인이 따로 두어야 한다.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2) 일반직원(법인 사무직원 포함)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법인 사무직원 포함)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인가 1991.8.28 관리 25422-343) (변경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72 조(법인의 사무조직)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서기관에 준하는 임직원으로 보한다. (변경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2) 제 1 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 73 조(교장 등)

(1) 고등학교에 교장 1 인과 교감 1 인 또는 2 인을 둔다.

(2)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3)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신설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제 74 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에 준하는 직원으로 보하되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인가 1999.2.2 행정 81422-119)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3 절 정 원

제 75 조(정원) 법인 및 북일고등학교, 북일여자고등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과 같다. 단, 사무직원 정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정원기준을 준용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1996.8.2 행정 81422-534)(변경인가 2009.01.09 행정지원과-292)(변경 2011.10.20 제 375 차 이사회의)
(변경 2014.02.26 제 380 차 이사회의)

제 8 장 보 칙

제 76 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변경인가 1990.12.4 관리 25422-290) (변경인가 2007.1.8 행정지원과-249)

제 77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78 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이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초의 임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겸 이사장	김종희	1922.9.24	5 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11
이사	김종철	1920.11.7	5 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5
이사	홍인기	1938.2.28	5 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06-17
이사	배두환	1926.11.5	2 년 6 월	대전시 선화 2 동 88-1
이사	김두현	1927.9.25	2 년 6 월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351-182

이사	김용준	1927.10.23	2 년 6 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 가 123
감사	진태두	1915.6.20	2 년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301-18
감사	차경준	1924.2.13	2 년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324-15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81 년 7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2.(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하고, 임기가 정해진 학교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86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86 년 10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3.20 관리 25400-87)

1.(시행일) 이 정관은 1990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0.12.4 관리 25422-290)

1.(시행일) 이 정관은 1990 년 1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8.28 관리 25422-343)

1.(시행일) 이 정관은 1991 년 9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8.2 행정 81422-534)

1.(시행일) 이 정관은 1996 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7 사학관계자협의회)

1.(시행일) 이 정관은 19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2.2 행정 81422-119)

1.(시행일) 이 정관은 1999 년 2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20 행정 81422-268)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4 행정 81800-22)

1.(시행일) 이 정관은 2001 년 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8 행정 81422-1284)

1.(시행일) 이 정관은 2001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7 행정 81422-902)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8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행정 81422-1478)

1.(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3.10 행정지원과-2424)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8 행정지원과-249)

1.(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제 14 조, 제 16 조, 제 16 조의 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규정에 의한다.

3.(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학교의 장 및 교감은 개정정관에 의거 신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11.5 행정지원과-10449)

1.(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제 16 조, 제 16 조의 4, 제 16 조의 5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규정에 의한다.

3.(육아휴직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9 행정지원과-292)

1.(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10 행정지원과-6229)

1.(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9.01 평생교육행정과-9103)

1.(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01 평생교육행정과-4905)

1.(시행일) 이 정관은 201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18 제 375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13 년 10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26 제 380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20 제 394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6 년 4 월 1 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12.26 제 398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9 제 406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19 제 419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20 년 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18 제 423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9 제 428 차 이사회의)
1.(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총 계	5 명
일반직 계	5 명
4 급 (교육행정)	1 명
5 급 (교육행정)	1 명
7 급 (교육행정)	1 명
8 급 (교육행정)	1 명
9 급 (교육행정)	1 명

(별 표 2)

학교 사무직원 정원

(북일고등학교)

총 계	16 명
일반직 계	16 명
5 급 (교육행정)	1 명
6 급 (교육행정)	2 명
7 급 (교육행정)	1 명
8 급 (교육행정)	1 명
9 급 (교육행정)	1 명
7 급 (사무운영)	1 명
8 급 (사무운영)	2 명
9 급 (사무운영)	2 명
7 급 (시설관리)	1 명
8 급 (시설관리)	3 명
9 급 (시설관리)	1 명

(별 표 3)

학교 사무직원 정원

(북일여자고등학교)

총 계	11 명
일반직 계	11 명
5 급 (교육행정)	1 명
6 급 (교육행정)	1 명
7 급 (교육행정)	1 명
8 급 (교육행정)	1 명
9 급 (교육행정)	1 명
7 급 (사무운영)	1 명
8 급 (사무운영)	1 명
9 급 (사무운영)	1 명
7 급 (시설관리)	1 명
8 급 (시설관리)	1 명
9 급 (시설관리)	1 명